
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조례 제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정비
 - 1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」
 - 2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」
 - 3) 「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」
 - 4) 「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」

- 5) 「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」
 - 6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」
 - 7) 「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」
 - 8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」
 - 9) 「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」
 - 10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」
 - 11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」
 - 12) 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」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순화 (감안 → 고려)
- 1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7조제2항, 제3항
 - 2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9조제2항
 - 3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4항
 - 4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1조제1항
 - 5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제1호
 - 6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한글맞춤법에 맞는 제명의 띄어쓰기¹⁾ 정비 및 법제처의 「알기

¹⁾ 법제처에서는 2005.1.1.부터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를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 사업으로 새로 제·개정되는 법령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행안부 2023년 기획정비 대상에도 제명

쉬운 법령 정비기준」²⁾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용어(감안→고려)로 일괄정비하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음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를 권고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법제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한자어, 일본어 투 표현 등 여러 가지 정비대상 용어가 제시되어 있는 바, 매년 주기적으로 정비대상 용어를 발굴해서 꾸준히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음

2)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10판), 법제처 2021년 12월 발행